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39
------	------

2016. 3. 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2월 23일, 신건택의원의 18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2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3. 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신건택 의원)

-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해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다양한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 위촉을 활성화하고, 일반시민 추천 조건 강화로 후보자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완화해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 위촉을 활성화하는 등 명예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명예시민증 수여제도 운영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시는 1958년 관련 제도¹⁾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92개국 740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4년

1) 1958년 공로시민증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1972년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와 같은 명예시민증 제도로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음.

21명, 2015년 25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음.

- 시는 특히, 여러 차례 제기된 명예시민 사후관리와 관련해 시 주요시설(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 시립미술관 등) 무료입장 혜택 외에 명예시민의 날(10.28)초청, e-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홍보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정 연계강화를 위해 연락이 닿는 232명의 명예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락과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시는 외국인 방문이 높은 일부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할인 혹은 무료입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명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다. 명예시민 거주 요건의 완화(안 제2조)

- 현재 시는 3년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가운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음.
- 안 제2조제2항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거주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반적인 거주요건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완화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실제 현재 시의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의 거주요건 기준은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귀화요건²⁾과 유사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다수의 경우에 명예시민증 수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명예시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혜택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와 같은 질적인 개선외에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정해 명예시민의 수를 늘려가는 양적확대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거주요건 완화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명예시민증의 권위나 희소성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임.

라.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의 강화(안 제3조)

- 안 제3조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후보자 추천 조건 가운데 일반 시민의 추천요건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함.

2)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일반 시민 추천의 조건을 강화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대상자 추천 가능성을 사전에 제한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과 선정과정의 공신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로 추천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시민에 의한 추천보다는 공공단체 혹은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의 강화가 명예시민증 자체의 권위나 공신력 회복으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마. 종합의견

- 시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이를 격려하고 서울 홍보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거주요건의 완화와 일반시민 추천제도의 강화와 같은 조치는 명예시민증 자체의 권위와 선정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혜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협력·유대강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병행해 명예시민제도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p>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p>	<p>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p> <p>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p> <p>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p>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p>